



울산광역시

##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

[시행 2015.10.30.] [울산광역시조례 제1559호, 2015.10.30.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박물관 및 그 산하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장 관람

**제2조(개관 및 휴관)** ① 울산박물관 및 그 산하 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그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.

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1월 1일
2. 월요일,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
3. 울산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

**제3조(관람 및 대표시간)**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관람권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관람료)**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(이하 "자체기획전"이라 한다)
2.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하여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(이하 "공동기획전"이라 한다)
3. 제1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은 전시(이하 "대관전시"라 한다)

② 자체기획전의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고, 공동기획전의 관람료는 공동주최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[전문개정 2015.10.30.]

**제5조(자체기획전 무료관람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0.30.>

1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5.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유물기증자와 그 가족
7. 65세 이상인 사람
8. 「울산 다자녀 사랑카드」 소지자 및 그 가족 1명
9.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 안내사
10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
1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12.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
13.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
14.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6조(관람권)**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관람권의 규격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 대표 및 회수는 대관받은 자(이하 "대관자"라 한다)의 책임으로 한다.

**제7조(관람의 제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할 수 없다. <개정 2011·10·13>

1. 술에 취한 자
2. 삭제 <2011.10.13>
3. 위험물이나 악취·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4.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(다만,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)
5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
6.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8조(행위의 제한)** ① 시장은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1. 흡연,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
  2.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
  3.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
  4.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**제9조(손해배상)**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3장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 [제목개정 2015.10.30.]**

**제10조** 삭제 <2015.10.30.>

**제11조(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)**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, 교육·문화 프로그램의 종류,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전시해설사)**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

② 시장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[제목개정 2015.10.30.]

**제4장 박물관운영위원회**

**제13조(위원회)**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4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30.>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울산박물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,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2.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
  3.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⑦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  2. 질병, 장기출타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
- ⑧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**제14조의2(분과위원회 운영 등)**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물분과위원회
  - 가.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
  - 나.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
2. 전시분과위원회

가. 박물관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

- ②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,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-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[본조신설 2015.10.30.]

**제15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.10.30.>

- 1.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- 5.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,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
- 6.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6조(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7조(위원수당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5장 대관**

**제18조(대관허가)**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

**제19조(대관시설)**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(이하 "대관시설"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울산박물관 : 기획전시실, 강당, 세미나실
- 2. 울산대곡박물관 : 기획전시실
- 3. 울산암각화박물관 : 기획전시실, 세미나실

**제20조(사용시간)**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21조(대관허가 접수)** ①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삭제 <2015.10.30.>

**제22조(대관허가 제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

- 1. 삭제 <2015.10.30.>
- 2. 정치·종교·집회 및 영리목적을 위한 행사
- 3.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**제23조(대관료)**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

**제24조(대관료 반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
- 2.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- 3.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15.10.30.]

**제25조(대관료 감면)**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,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박물관 운영

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관전시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30.>

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26조(대관허가의 취소 등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
2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경우
4.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때

**제27조(대관자의 준수사항)**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**제28조(손해배상 및 변상조치)** 대관자는 제27조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,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**제6장 편의시설 설치·운영 등**

**제29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**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·외에 다음 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식당
2. 기념품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**제3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 <제1559호, 2015.10.30>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11.10.13. 조례 제123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15.10.30. 조례 제1559호)

**제1조(시행일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박물관 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)**

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관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